



LEGAL UPDATE

정보보호센터

Oct. 202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후속조치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개정 · 시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10. 1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이하 '조사 및 처분 규정'이라고 합니다)을 개정하여 10. 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 3. 8. 화우 뉴스레터에서 다루었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조사 및 처분 규정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드리겠습니다.

1.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제6항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개인신용정보 누설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요구 등)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조사 및 처분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 처분의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빅데이터 ·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의 활용성이 증대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아울러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화우 2023. 3. 8.자 뉴스레터 참고)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 · 예방적 조치를 위한 '사전 실태점검'(제63조의2) 제도를 신설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증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사전 실태점검 제도 신설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23. 10. 16. 조사 및 처분 규정을 개정 ·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이번에 개정된 조사 및 처분 규정은, 조사 및 처분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외에도 조사와 처분의 예측가능성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사전 실태 점검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다양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개정된 조사 및 처분 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분류	구 분	주요 내용
조사처분 과정의 적법절차 강화	현장조사 조사공문 교부 절차 강화 (제10조 제2항)	• 현장조사를 할 때 긴급사항 시에도 구두 통지가 아닌 조사공문을 교부하도록 개선
	조사대상자의 조사 대응 권리 강화 (제12조의2)	•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의견제출 기한 연장 및 현장조사 연기 등 조사 연기 요청 절차 명시
	처리결과 통지 강화(제15조의4)	• 사건종결 시 조사대상자에게 처리결과 안내 및 필요한 경우 신고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게 규정
	의결서 공개 기준 마련(제25조의3)	• 위원회 회의 공개 기준에 준하여 처분에 대한 의결서 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비식별 처리하도록 조치
업무 프로세스 및 체계 개선	사건관리 체계화(제8조의2 등)	• 사건 분리·병합 절차 신설, 사건번호 부여 체계 개선 및 각종 규정에 산재된 절차서식을 정비하여 효율성 도모
	처리기간 등 명확화(제7조 등)	• 일부 미비한 단계별 처리기한을 명확화하고 전체 단계별 처리기한을 규정하여 조사 지연 관리 강화
	경미한 사건의 처리기준 신설 (제31조의6 등)	• 경미한 사건은 처리 간소화, 조사 미착수·종결 사유 확대 등으로 행정력 소모 방지 • 경미한 사건은 소위 의결 또는 사무처에서 전결할 수 있도록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반영	선제적·예방적 제도 신설 (제30조부터 제30조의9)	• 개인정보 침해를 선제적·예방적 점검할 수 있는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세부 기준 마련

3. 시사점

이번에 개정된 조사 및 처분 규정은, 2020년 데이터3법의 시행 당시 제정된 이후 처음 개정된 것으로서,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절차적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공문 교부를 원칙화하고, 조사 연기 요청 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조사 절차에서의 상당한 변화가 예정되었기에,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대응 실무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참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후적인 개인정보 침해 평가는 물론 사전적인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수의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화우의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와 정보보안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

이수경

T. (+82) 2 6182 8132

파트너변호사

E. sgyi@yoonyang.com

배종우

T. (+82) 2 6182 8745

변호사

E. jwbai@yoonyang.com

백재환

T. (+82) 2 6182 8366

전문위원

E. jhb@yoonyang.com

지재원

T. (+82) 2 6003 7568

연구위원

E. jwji@yoonyang.com